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안내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신고한 경력사항은 전력

기술인경력수첩, 감리원수첩, 경력확인서, 보유확인서, 설계사면허 등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확인자료로 활용되므로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에 대한 공적인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은 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관리업무(각종서식은 협회 본부 및 지부에 기 배포된)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경력사항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이 경력관리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대표전화 : (02)561 - 3491) 경력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			
1. 전력기술인의 범위	29	3. 발급신청방법	33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29	가. 공통사항	33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	29	나. 종류별 신청방법	33
2. 감리원의 자격 기준	29	(1) 전력기술인경력수첩	33
3. 경력신고방법	29	(2)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3
가. 경력신고대상	29	(3)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33
나. 경력신고서 교부·접수처 및 접수시기	30	(4) 감리원수첩	33
다. 경력신고서류	30	(5) 감리원경력확인서	34
라. 경력신고방법	31	(6) 감리원보유확인서	34
마. 경력신고시 유의사항	31	(7) 설계사면허	34
바. 경력신고서류 구비시 참고사항	31		
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32		
II.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현황 제출		IV. 협회 회원가입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1. 대상	32	1. 회원가입	34
2. 방법	32	가. 회원가입대상	34
III. 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 및 확인서 발급		나. 회원가입이 필요한 전력기술인	34
1. 경력산정기준	33	다. 회비	34
2. 발급서류의 종류	33	2. 제증명 발급수수료	35
		첨 부	
		1. 전력기술인의 등급	35
		2. 감리원의 자격 기준	36
		3. 경력산정기준	36
		4. 경력신고서 작성 예	37

I.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확인

(관련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8조)

1. 전력기술인의 범위(영 제3조 및 별표 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기 술 계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밀 송 배 전 전 기 기 기 전 기 응 용 철 도 신 호 전 측 전 기 설 비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진 기 공 사	
기 능 계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공사	다기능 기술자 전 기	기능사 1급 (*포지기능사) 전기기기 전기공사	기능사 2급 (*포지기능사) 전기기기 전기공사 *승강기보수 *철도신호
				진 기 기 기 내 신 공 사 외 신 공 사

* '96. 1. 1 이후 자격종목의 명칭이 변경된 종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능사 1급	전기설비	전기공사
기능사 2급	밀 전 설비, 변 전 설비, 송 배 전 설비	전기공사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인정기술자)

- ①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기술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합니다(등급기준은 첨부 1 참조).
- ②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력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③ 전력기술관련학과 이외의 졸업자도 경력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초급 또는 중급 전력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④ 전력기술관련학과는 다음과 같은 학과를 말합니다.
 -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기계·전기·전자공학군(부) 등은 전력관

련학과를 이수한 자

⑤ 전력기술업무경력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계획·조사·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군에서 공병·발전·시설병과로서 전력기술관련분야에 복무한 경력 등을 말합니다.

*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력기술인(인정기술자) 이란?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이외의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전력기술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학력·경력으로 인정기술자격을 받은 경력수첩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2. 감리원의 자격(영 제21조 및 별표 2)

- ① 감리원은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의 전력기술업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합니다(등급별 자격기준은 첨부 2 참조).
- ② 감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은 전력기술인정력신고를 하고,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아야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체감리대상기관에 소속된 감리원은 전력기술인정력신고를 하고,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아야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체감리대상기관(영 제20조제1항제6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부산교통공단·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3. 경력신고방법(영 제9조·제21조 및 규칙 제8조·제18조)

가. 경력신고대상

- ①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등급의 확인 또는

-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감리원수첩, 감리원경력확인서, 설계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 경력관리를 원하는 전력기술인
-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또는 감리원보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그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신고서 교부·접수처 및 접수시기

① 교부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본부 및 지부

② 접수처

- 협회 본부 경력등록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2 상민B/D
401호(Tel: 561-3491)

③ 접수시기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계속 접수[시간 : 09: 00~16: 00(토요일은 13: 00까지)]

다. 경력신고서류(규칙 제8조 및 제18조)

① 경력신고는 전력기술인경력신고서(규칙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협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변경신고는 최초의 경력신고 이후 경력·자격·학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 경력변경신고서(규칙 제5호서식) 및 해당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② 첨부서류

(1)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경력확인원(규칙 제6호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신고인 본인의 전 근무지 근무경력에 해당
 - 재직증명서는 신고인 본인의 현 근무지 근무경력에 해당
 - 경력변경신고시에는 경력확인원(규칙 제6호서식)만 인정
 - 병역법에 의한 경력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확인서

(2) 경력증명서·경력확인원 또는 재직증명서를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빙자료(다음 각각의 서류중 1종을 첨부)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내역안내서·자격확인서 또는가입내역서
-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확인서
- 직장의료보험증 원본 및 사본
- 직장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편성확인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등록·신고·검사등 펠증 원본 및 사본
-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등록·신고사항 등이 기재·날인된 수첩 원본 및 사본
- 기타 해당 경력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특별법에 의한 기관의 근무경력은 위 (2)의 경력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위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경력변경신고시에 경력확인원(규칙 제6호서식)을 대신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취득한 전기분야의 모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되,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발급·기술인등급·감리원등급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격수첩은 자격증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한 자격수첩을 제출하여야 하여, 교육이수사항이 기재·확인된 면을 포함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기분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서

- 학위취득증서는 학사학위이상 취득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졸업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는 예외)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는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첨부

(5) 현근무지 재직증명서

(6) 증명(2×3cm)사진 1매(경력신고서에 부착)

라. 경력신고방법

①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 신고서류 및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제출

②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신고서류와 대리인 및 신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제출

③ 본인이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신고서류 및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자격수첩 등 반송용 등기우표를 동봉

④ 소속회사에서 일괄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

- 각 전력기술인의 신고서류 및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 회사명의의 일괄신고 공문 및 전력기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경력신고시 유의사항

① 경력신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된 경우

경력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서류 특히 증빙자료 구비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 설계업체·감리업체·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회원미가입자는 경력신고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서는 접수가 보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된 경력에 대하여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협회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경력신고서류 구비시 참고사항

① 폐업 또는 매각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 자는 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되, 경력확인시 추가확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서약서(협회서식 제1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경력보증서(협회서식 제2호): 경력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는 자: 경력 불인정

② 1991년이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대행포함)로 선임되어 현재 근무중인 전력기술인의 경우

• 구. 대한전기기사협회 해당지부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대행포함)선임 확인신청서 제출시 기제출한 경력증명서류 및 해당증빙자료의 복사본에 해당지부에서 원본대조필(지부명판 및 원본대조필인을 찍고, 지부담당자가 날인)한 경력 등 관련자료를 제출

- 다만,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확인신청시 제출한 경력증명서류 및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이후 추가되는 전력기술업무 수행경력에 대하여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또는 직장의료보험가입확인서 중 1종을 첨부하여 제출

③ 1993년 구·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안전관리사확인증 소지자의 경우

• 전기안전관리사확인증 원본 및 사본

• 전기안전관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 추가되는 전력기술업무 수행경력에 대하여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또는 직장의료보험가입확인서 중 1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신고서류의 사실확인후 상기서류외의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립니다.

- ④ 외국에서 국내·외회사에 근무한 전력기술인
-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의 방법에 따르되,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서 및 여권원본 및 사본 등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변경신고서 작성요령

- ① 경력신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양식의 기재는 서식 뒷면하단의 기재요령을 참조
 - 주소는 현재 거주지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
 - 회사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회사명을 표기
 - 학력사항은 전기분야학과 최종학교 졸업 및 학위취득사항을 표기하고, 대학원졸업자는 대학도 표기
 - 국가기술자격란은 본인이 취득한 전기분야 기능사보이상의 모든 자격을 기재하되, 기술사·기사·다기능기술자·기능사 순으로 등급이 높은 것부터 기재
 - 교육훈련란은 전력기술업무와 관련한 최근의 교육훈련이수사항을 기재
 - 상훈·제재란은 전력기술관련법령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훈·제재사항을 기재

* 기술경력란은 첨부 4(경력신고서 작성 예) 참조

- ② 경력변경신고서 작성요령
- 최초의 경력신고서 제출이후 변경된 사항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현황제출

(관련근거: 영 제8조 및 제24조)

1. 대상

- ① 전력기술인 현황제출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
 - 전기사업자(일반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 용량1천킬로와트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② 감리원 현황제출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2. 방법

① 신고서 교부·접수처

- 교부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본부 및 지부
- 접수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본부 경력등록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2 상민빌
딩 401호(Tel: 561-3491)

② 전력기술인현황신고

- 신고내용: 소속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부서 이동·퇴직사항 등
- 신고방법
 -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규칙 제3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감리원현황신고

- 신고내용: 소속 감리원에 대한 현장이동 사항, 기술자격·학력변경사항, 상벌사항, 입사, 퇴사 등
- 신고방법
 - 감리원현황신고서(규칙 제28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 및 확인서 발급

1. 경력산정기준(규칙 제9조 및 별표 1) (첨부 3 참조)

2. 발급서류의 종류

-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 감리원수첩, 감리원경력확인서, 감리원보유확인서
 - 설계사 면허
-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는 해당기관 및 업체에서 발급신청시에만 발행됩니다.

3. 발급신청방법

가. 공통사항

- 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은 경력수첩·감리원수첩·설계사면허 및 확인서 발급신청이전에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경력신고 및 발급신청을 동시에 하여도 됩니다).
- ② 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통상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뒷면 복사),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은 경력확인 및 조회 등으로 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⑤ 직접 협회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다만, 우편으로 발급신청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급수수료(소액환)와 반송용등기우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소속회사에서 일괄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각 전력기술인의 신고 및 신청서류,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 회사명의의 일괄신고 공문 및 전력기술인명부를 제출하여

야 하며, 직접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⑦ 신청서 교부·접수처 및 접수시기

- 교부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본부 및 지부
- 접수 및 발급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본부 경력등록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2 상민빌딩 401호(Tel: 561-3491)
- 접수 및 발급시기
 -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계속 접수[시간: 09: 00~16: 00(토요일은 13: 00까지)]

나. 종류별 신청방법

(1) 전력기술인경력수첩

- 전력기술인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규칙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증명사진(2×3cm) 1매
 -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협회서식 제4호)
 -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

※ 용도

- 전력기술인의 등급 확인
- 전력기술인 교육훈련의 이수사항의 기록·확인

(2)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규칙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도

- 전력기술인의 등급·경력 및 근무처 확인

(3)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규칙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력기술인현황(규칙 제3호서식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의 뒷쪽)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수첩

- 감리원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규칙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

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증명사진(2×3cm) 1매
- 감리원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 분실 사유서(분실의 경우)(협회서식 제4호)
-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

* 용도

- 감리업등록시 감리기술인력의 등급 확인
 - 감리업무수행시 발주자가 감리원의 등급 확인
 - 감리원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의 기록·확인
 - 자체감리대상기관의 감리원자격 확인
- *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사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감리원경력확인서

- 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규칙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도

- 감리원 배치시 감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
- 감리원의 등급·경력 및 근무처 확인

(6) 감리원보유확인서

- 감리원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규칙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력기술인현황(규칙 제3호서식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의 뒷쪽)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설계사면허

• 설계사의 자격 및 등급

- 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설계사면허증발급신청서(규칙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반명함판사진(3×4cm) 1매
-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 사본

* 용도

- 설계업등록신청시 설계기술인력의 해당 설계사 자격 확인
- 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IV. 협회 회원가입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1. 회원가입(법 제20조)

가. 회원가입대상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 ②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자) 대표 및 대행기술인력 포함]
- ③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나. 회원가입대상 전력기술인

- ④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설계사면허, 감리원수첩,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다. 회비

(단위: 원)

회원	회비		비고
	입회비	년회비	
직무	설계	120,000	120,000
	감리	120,000	120,000
	공사	120,000	120,000
	선위	120,000	120,000
회원	대행	120,000	150,000
	기술개자격자	80,000	80,000
	기능계자격자, 화·경력자	60,000	60,000

회원		회비	입회비	년회비	비고
특별 회원	특급	300,000	10,000,000 이상		
	1급	300,000	5,000,000 이상		
	2급	300,000	3,000,000 이상		
	3급	300,000	500,000 이상		

* 1996. 11. 28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1996. 11. 28 현재 회원자격이 유효(회비미납 등으로 인한 자격 정지, 제명 등 사유가 없는)한 전력기술인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으로 승계됩니다.

2. 제증명 발급수수료

*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농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구분	종류	금액(원)
설계사 면허	발급	10,000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5,000
자격 확인	수첩	13,000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5,000
	증명서 발급	10,000
	확인서 발급(면당)	5,000

첨부 1

전력기술인의 등급

구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특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1급이상(다기능기술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 위 표의 학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력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조사·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시설병과에서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첨 부 2

감리원의 자격 기준

구분	국가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복 금 감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감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감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감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안전관리분야의 전기안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기술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감리원의 해당경력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첨 부 3

경력산정기준(시행규칙 제9조 관련)

1.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다.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라.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 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 등 기술업무
- 나.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 등의 기술업무
- 다. 계량법에 의한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 마. 전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 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아. 전자·통신 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첨 부 4

경력신고서 작성 예

1. 설계업체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5. 12. 31~96. 12. 31	(주)00설계사무소	한전송배전선로 기본설계	계장	본사/설계	한국전력공사
2						

※ 기재요령

- 기 간: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안전관리·검사·점검·감독·감리·설계·견적·기술·현장소장·공사·진단등에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근무처명: 근무하였던 회사명 기입
- 참여사업: 참여하였던 설계·공사·감리용역명을 기입(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경력 등은 참여사업명 및 발주자를 기재하지 아니함)
- 직 위: 참여 당시 근무처에서의 직위(계장, 대리, 과장, 기술이사 등)
- 담당업무: 계획·조사·안전관리·검사·점검·감독·감리·설계·견적·기술·현장소장·공사·진단 등
- 발주자: 사업을 발주한 기관 및 단체명을 최소단위기관까지 기재하여, 하도급일 경우 원발주자를 표기(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경력등은 발주자를 기재하지 아니함)

2. 감리업체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4. 12. 31~95. 12. 31	(주)00 전기감리단	서울-수원간 송전선 책임감리	과장	감리지원	한국전력공사
2	96. 1. 12~96. 6. 30	"	"	부장	감리	"

3. 공사업체의 본사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5. 12. 31 ~ 96. 12. 31	00 전기공사	○○아파트신축 전기공사	제장	본사/건적	대한주택공사
2						

4.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3. 12. 31 ~ 94. 10. 31	00 전기공사	○○아파트신축 전기공사	과장	시공	대한주택공사
2	94. 11. 1 ~ 95. 10. 10	"	"	부장	워장·소장	"

5.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5. 1. 12 ~ 95. 12. 31	○○전기안전대행사		부장	안전관리	
2						

6. 전기안전관리담당자(상주)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4. 12. 31 ~ 95. 10. 12	○○그룹빌딩		부장	안전관리	
2						

7.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0. 12. 31 ~ 95. 12. 31	○○부 ○○국		제장	신기안전	
2						

8. 군(공병·발전·시설병과)에서 근무한 기술경력

연번	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93. 12. 31 ~ 96. 6. 30	○○부대		하사	감독보조	
2						